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4월 30일, 이병진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5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6.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7.29.)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6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7.29.) 상정, 소위심사보
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병진 의원)

현행법은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농산물 비축 및

수매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WTO 수입의무물량과 수급 부족 물량을 수입·비축하였다가 방출하는 수입비축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훈령에 따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최근 고물가 상황으로 수입비축사업의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물가 안정에 대한 소비자 체감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또한 정부가 수입 및 공급 전반에 대한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국영무역 품목 사업의 경우 수입단계 이후의 공급 및 판매 등에 대한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입비축사업의 취지 및 목적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영무역 품목의 수입비축사업에 따라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금 수입물량 배분 및 판매 실적 등을 위탁사업수행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가 사업의 효과성 및 배분의 적절성 등 사후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업 관리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실수요자,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정부의 수입농산물 수입비축사업의 실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개정안은 수입비축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 제도로 구성됨.

첫째, 안 제13조의2제1항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훈령에 따라 위탁사업자인 aT로 하여금 매년 3월말까지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을 수립

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

참고로, 현행 훈령은 ‘국영무역 품목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① 국영무역 품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② 그 외 품목에 대한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은 ‘국영무역 품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 포함사항을 국영무역 품목으로 축소·한정함.

이에 따라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aT가 수립하는 계획에서 국영무역 외에 수입권공매나 실수요자배정 방식 등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사항이 제외될 수 있어 보임.

둘째, 안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판매실적 보고, 점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일련의 수입농산물관리운영계획 피드백(Feedback) 구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는 ① aT로부터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연도 판매실적을 aT에 보고하고, ② aT는 보고받은 실적을 토대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또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aT에 통보하여 수입농산물관리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수입비축사업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비축사업이 농산물의 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

악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은 현행법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훈령 등 실제 제도의 시행상 모습을 바탕으로 관리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현행법의 규정과 일부 대응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개정안은 ‘수입비축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님.

비축사업의 법적 근거인 현행법 제13조에서는 비축용 농산물의 확보 방식을 수매·수입 등으로 구분하고는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비축사업의 유형을 수매비축사업과 수입비축사업으로 구분하지는 않음.

현재 실무적으로 비축사업의 유형을 이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훈령인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의 사업 구분에 따른 것임.

따라서, 법률상에서 ‘수입비축사업’이라는 용어를 활용하기 위하여는, ‘농산물을 수입하여 비축하는 사업(이하 “수입비축사업”이라 한다)’와 같이 먼저 ‘수입비축사업’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개정안은 관리대상 품목을 수입비축사업 중 국영무역 방식으로 수입된 품목으로만 한정하는데, 현행법은 비축용 농산물을 수입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만 규정할 뿐, 그 수입 방식을 규정하지는 않음.

현재 aT가 수입비축사업을 국영무역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개정안과 같이 관리 대상

을 국영무역 방식으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만약 방식을 한정하지 않는다면, ① 방식에 관한 문언을 삭제하거나,
② 현행 훈령과 같이 ‘국영무역 등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원택)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